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027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행정절차에 따라 서울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10%로 정한 점을 감안하여 안 제8조제5항 중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15% 이상” 에서 “10% 이상” 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5항 중 “15% 이상” 을 “10% 이상”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u>15% 이상</u>을 청년으로 위촉한다.</p> <p>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u>10% 이상</u>을 청년으로 위촉한다.</p> <p>⑥ ~ ⑧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⑤ ~ ⑦ (생략)</p> |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u>”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